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93
----------	------

2023년 12월 19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0월 16일, 이종배 의원
2.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3. 상정일자 :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2023년 12월 19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종배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관내 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올바른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다.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규정(안 제4조~제5조).

라. 포상 규정(안 제6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3년 10월 16일 이종배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393호로 발의되어 2023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시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국회는 2016년 2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법률 시행에 따라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표]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 관련 사업

연번	사업 내용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예산(천원)
1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교육환경평가시스템 관리용역	322,161
2	교육환경보호제도 홍보 및 연수	4,815
3	교육환경평가제도 법률 자문	660
4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26,920
5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121,200

○ 한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에서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례안이 단위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학생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의미있는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총칙 규정으로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제3조)를 규정하였고 본칙 규정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지원(안 제4조), 협

1) 제24조(보호구역의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방지 등을 위한 계도 등(이하 이 조에서 “관리”라 한다)을 한다. 다만,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의 관리는 보호구역을 설정한 자가 한다.

2) 제2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점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은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력체계 구축(안 제5조), 포상(안 제6조)을 규정하여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법실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책무(안 제3조)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지원(안 제4조)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이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³⁾에 따른 학교장의 활동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장은 동법에 규정된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⁴⁾

3) 제24조(보호구역의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방지 등을 위한 계도 등(이하 이 조에서 “관리”라 한다)을 한다. 다만,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의 관리는 보호구역을 설정한 자가 한다.

② 학교 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 그 중복된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한다.

1. 상·하급 학교 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로 한다.

2. 같은 급의 학교 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간에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 그 중복된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는 절대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한다.

4)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 및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교육감이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검토(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서울시교육청은 세부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교육환경보호 정책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를 설정하고, ①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부처 관계 위원회에 위원(교육환경보호위원회 소속) 추천 ② 교육환경평가 승인사항에 대한 이행도모를 위한 인·허가 기관과의 협업 ③ 교육환경평가 관계기관 소속 위원회와의 협력 ④ 학교 주변 유해시설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 제5조는 향후 서울시교육청이 기존의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으로 생각됩니다.

다. 교육청 의견에 대한 검토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에 대해 ① 현재 「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동 조례안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② 동법에는 조례 위임 조항이 없으며 ③ 법령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동 조례안의 내용을 시행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5379, 2023. 10. 27.).

- 그러나 동 조례안의 주 내용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단위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이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동 조례안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 사업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동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지원)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현황 조사 및 금지행위의 방지 등을 위한 계도 등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 서울경찰청,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 교육감은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